2025
핵심 개정세법

02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세무사·조세전문가용)

2025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

01 국세기본법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 일반우편 송달대상에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분부터 적용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선(국기법 §47의4, §47의5)

○ 납세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 등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지정납부기한까지 국세 등을 완납하지 아니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지금까지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하루 단위로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하였으나, 앞으로는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납부지연가산세 산정

○ 납세자가 체납된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하여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징수법」에 따라 독촉하는 경우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 시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 50% 감면 요건 중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로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 납세자가 국세 관련 처분 등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의 절차 외에 과세관청에 고충민원을 제기하는 경우에도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납세자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한 내용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보완기간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미포함

○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 통지기간에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통지기간을 5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하려는 사실과 사유를 납세자에게 통지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02 국세징수법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0의2)

○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 체납자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원으로 하여금 실태확인을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 관할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가상자산의 매각을 포함

<적용시기> '26.10.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03 소득세법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林地)의 임목(林木)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출산 및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12)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등도 근로자나 공무원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소득세 비과세

○ 근로자 또는 종교 관련 종사자 본인이나 그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또는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해당 자녀 1명당 월 20만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해 배당가산율을 10% → 11%로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12.31. 이전 지급받은 소득분은 종전 규정 적용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확대 (소득법 §57의2①·②, §129⑧·⑨·⑩)

○ 연금계좌를 통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에 대해서도 그 지급받은 금액에 대하여 간접투자회사 등이 외국에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간접투자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개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변경
(소득법 §57의2②·③)

○ 종합소득과세 또는 퇴직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을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변경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교육비 세액공제 확대(소득법 §59의4③)

○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등을 위하여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 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세액공제 가능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중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 2026.1.1. → 2027.1.1. 이후로 시행 시기 유예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를 위해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에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양도가액에서 소득처분금액을 차감하는 방법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적용 예외 대상 추가(소득법 §97의2①)

○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해당 자산의 취득가액으로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적용할 때, 양도 당시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는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 국외 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부여하는 주식 등에 국외 주식 등을 추가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4% → 3%로 인하

○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의 원천징수세율을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60% → 50%로 인하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사업소득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세액 분납제도 신설(소득법 §144의2)

○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 허용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 §156의6, 법인법 §98의6)

○ 실질귀속자 또는 국외투자기구로부터 신청서등 및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제출받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과 국외투자기구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국내원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의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162의2②, §162의3③)

○ 신용카드가맹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 중 예외적으로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한 대상 및 방법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를 위해 국외주식 거래내역 자료 제출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수용 시 주택부수토지 판단 기준일 조정(소득령 §154⑦·§167의5·§168의12)

○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수용되거나 그 밖의 법률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 사업인정 고시일 직전일의 토지 용도에 따라 주택부수토지의 인정 배율 결정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기간 연장 (소득령 §167의3)

○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시 중과대상 주택 및 주택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을 현행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분으로 1년 연장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자료별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 4])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증명자료에 대한 자료집중기관에 보건복지부 추가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04 법인세법

법인투자자에 대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 (법인법 §15②, §57의2①·②·③)

○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를 위해 익금 범위에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변경*

※ (공제한도금액) A × B / C
A : 산출세액
B :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여부와 무관)합계액 + ⓐ
C : 과세표준(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 합병대가의 범위를 명확화하기 위해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중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뿐만 아니라 외국법인의 주식까지 포함

사회적기업의 기부금 세제지원 확대(법인법 §24③)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비율을 20% → 3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신설(법인법 §51의2)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투자자에게 배당한 경우 그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그 배당을 받은 주주 등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에도 해당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가 소득공제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법인세 세율 조정(법인법 §55①)

○ 일반 내국법인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원 이하는 10%,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내국법인 등의 경우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00억원 이하는 20%, 200억원 초과 3천억원 이하는 22%, 3천억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씩 인상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일반법인]

〈종전〉

과세표준	세율
0~2억원	9%
2억원~200억원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개정〉

과세표준	세율
0~2억원	**10%**
2억원~200억원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종전〉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

〈개정〉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20%**
200억원~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연결납세방식의 취소 등에 따른 사후관리 합리화(법인법 §76의9, §76의12)

○ 연결납세방식 적용 승인 후 5년 이내에 연결납세방식이 취소되거나 연결자법인이 배제되는 경우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과 합한 소득금액을 익금에 산입하고, 다른 연결법인의 소득금액과 합한 결손금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하나, 그 결손금에 대하여 이미 대가를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익금 또는 손금 산입에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 §76의14②, §113⑤)

○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에 대해서 연결법인으로 개정하여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을 보완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를 위해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항목에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범위 합리화(법인법 §93)

○ 외국법인이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를 통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도 국내원천 배당소득에 포함

○ 외국법인이 국내에 있는 자산을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는 경우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을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받아 생기는 소득에 포함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미제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신설(법인법 §94의2④, §124②)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외국법인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인건비 제한 적용대상 비영리법인 범위 명확화(법인령 §56⑪)

○ 임직원 인건비 한도 제한규정이 적용되는 비영리법인의 범위에 장학법인과 사회복지법인만 포함된다는 점 명확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한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에 대한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배제(법인령 §92의2②)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매입한 비수도권 소재 미분양주택에 대하여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 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배제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11⑧)

○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 등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국채 등의 이자소득 원천징수

<적용시기> 영 시행일(2025.11.28.)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05 부가가치세법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에 미디어콘텐츠 창작업 추가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거짓세금계산서 발급·수취에 대한 가산세율 상향(부가법 §60)

○ 현행법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가공세금계산서 수수행위는 지속되고 있는 등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사업자가 실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사업자가 아닌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한 경우 그 세금계산서등에 적힌 공급가액에 부과하는 가산세율을 현행 3% → 4%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가공세금계산서등을 발급·수취하는 분부터 적용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 의무 부과(부가법 §74)

○ 최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한 조세감면 특례를 적용받고자 등록한 사업장이 아닌 다른 곳에서 실질적인 사업을 하면서 허위로 감면 특례를 받고 있는 경우가 적발되고 있어 허위 세액감면을 방지하고 공정한 세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의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하여 납세의무자에게 실질적 사업운영 현황을 입증하는 증빙자료 제출의무 부과

<적용시기> '26.1.1.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제출하도록 하는 분부터 적용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공제한도 적용기한 연장
(부가령 §84②·③)

○ 소상공인의 원재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면세농산물 등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우대 한도의 적용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연장

0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영리법인에 유증 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 영리법인을 통한 상속세 회피 방지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인 경우 등에는 그 법인의 주주 중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에게도 상속세 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33)

○ 증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유가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도 증권시장과 같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는 재산에서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 증여자 적용범위를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하도록 규정 명확화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사후관리 대상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에 해당 재산을 원본으로 취득한 재산, 해당 재산의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재산 및 해당 재산의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재산도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07 종합부동산세법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 §12 등)

○ 위탁자별 구분 과세가 곤란한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의 효율성 및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신탁재산의 수탁자로서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의 범위를 종전의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뿐만 아니라 위탁자별로 구분과세가 곤란한 조합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 §12의2)

○ 신탁재산에 대한 과세채권 확보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탁자가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와 관련하여 발생한 종합부동산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경우 수탁자의 물적납세의무 부과대상에 해당 신탁주택 또는 신탁토지의 관리, 처분, 운용 등을 통하여 수탁자가 얻은 재산 포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 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 §17⑤)

○ 법률의 위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제외 주택의 요건을 추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대하여 경감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을 추징하는 대상 주택의 범위와 관련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근거 마련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적용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중과 배제 기간 연장(종부령 §4의3)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주택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 종합부동산세 부과 시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고 종합부동산세 중과를 배제하고 있는데, 그 적용시기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로 1년 연장

08 조세특례제한법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범위 확대(조특법 §6)

○ 일반 창업중소기업보다 높은 감면율을 적용받는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인 기업에서 1억4백만원 이하인 기업으로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무역보험기금 출연금을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조특법 §8의3)

○ 내국법인이 무역보험기금에 협력중소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10% 상당액을, 협력중견기업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지원 목적의 출연금을 출연하는 경우 출연금의 5% 상당액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출연하는 분부터 적용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한도 확대*(조특법 §12의2)

○ 연구개발 우수인력 근로자 수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한도 확대

※ (종전)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개정)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청년·서비스업·우수인력 2,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목적회사를 통한 출자 시 세제지원(조특법 §13, §13의2)

○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함으로써 받는 배당소득 등에 대하여 비과세하고,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하고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벤처기업 등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 그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중 5%에 상당하는 금액을 내국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14)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 (특례 대상 소득)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결제은행(BIS)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

※ 정부가 가입주체인 국제금융기구는 가입·설립협정 등을 통해 국내원천 이자소득 등에 대해 비과세 적용, BIS는 각국 중앙은행이 가입주체로서 비과세 협정이 없음

○ 국제결제은행(BIS)이 국내 예금, 환매체(RP) 등 원화표시 자산 투자 시 해당 투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적용

※ 이자소득, 배당소득, 유가증권 양도소득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 확대(조특법 §25의6)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기본공제 금액을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의 5%에서 1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7)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시 세액공제 적용대상을 중소·중견기업에서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5의8)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의 10%(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웹툰콘텐츠가 처음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사업용 유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28의5)

○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기계장치 등에 대해서는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하였는지와 관계없이 손금 산입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고용지원을 위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 합리화(조특법 §29의8)

○ 현재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까지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세액공제를 중단하고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였으나, 앞으로는 처음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는 더 많은 공제금액을 적용받도록 하고, 상시근로자의 수가 감소한 경우에도 공제받은 금액을 추징하지 아니하도록 세액공제 구조 개편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하여 상시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경우에만 세액공제 적용

1인당[1] 공제액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우대 (청년등[2])	1,450(3년) → (1년차)700 + (2년차)1,600 + (3년차)1,700	1,550(3년) → 1,000 + 1,900 + 2,000	800(3년) → 500 + 900 + 900	400(2년) → 300 + 500
기본	850(3년) → (1년차)400 + (2년차)900 + (3년차)1,000	950(3년) → 700 + 1,200 + 1,300	450(3년) → 300 + 500 + 500	–

1) 중견· 대기업의 경우 '고용증가인원 – 최소 고용증가인원' 기준

2)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4)

○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적용요건) ❶출자법인 및 피출자법인이 각각 그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보유, ❷출자법인이 현물출자일 다음 날부터 그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피출자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80% 이상을 보유, ❸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현물출자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사업 계속 유지

○ (사후관리)

-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하는 경우에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중 처분한 주식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익금에 산입(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제외)
- 출자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등의 양도차익 전액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에 ▲출자법인, 피출자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하는 경우, ▲피출자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외국자회사의 주식등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처분하는 경우, ▲출자법인이 피출자법인의 주식등을 일정 비율 미만으로 보유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의 금액을 고향사랑 기부금으로 기부한 경우의 세액공제율을 15%에서 40%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 §63의2)

○ 기업이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성장촉진지역 등으로 이전하는 경우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10년 동안 감면대상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전부 감면하고, 그 다음 5년 동안은 법인세의 50%를 감면하되, 이전기업이 지방에 투자한 금액 및 이전한 본사 또는 공장의 상시근로자 수와 연계된 감면한도 적용

○ 이전기업의 지방에 대한 투자·고용과 연계된 감면한도 신설*

※ 지방 투자누계액의 70% + 지방근무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 추징

[지방이전 세액감면기간 확대]

구분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종전	개정	종전	개정
수도권[2]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 3년 50%	**10년 100%** **+ 5년 50%**	5년 100% + 2년 50%	5년 100% **+ 3년 50%**
그 외	10년 100% + 2년 50%	10년 100% **+ 5년 50%**	7년 100% + 3년 50%	7년 100% **+ 4년 50%**

1) 인구감소지역, 성장촉진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본사 이전은 미적용)
3) 당진시, 아산시, 원주시, 음성군, 진천군, 천안시, 춘천시, 충주시, 홍천군(내면 제외), 횡성군
4) 구미시, 김해시, 전주시, 제주시, 진주시, 창원시, 청주시, 포항시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본사를 철거·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에 농지 현물출자 시 지원방식 전환 (조특법 §66, §68)

○ 현재는 농업인이 농지 또는 초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였으나, 앞으로는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영농조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이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대상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 추가(조특법 §71의2①)

○ 인구감소지역과 수도권 밖의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2에 따른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

<적용시기> '25.11.28. 이후 취득하는 주택분부터 적용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확대(조특법 §85의6②)

○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면서 인증 이후 최초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이후 5년간 30%의 감면율이 적용되도록 감면기간을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부터 적용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 과세표준 20억원 초과 구간의 세율을 12% → 15%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조특법 §88의2)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을 65세 이상 거주자에서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거주자로 조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88의5, §89의3)

※ 상호금융 조합원, 준조합원등의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비과세 적용

○ 농협·수협·산림조합 조합원과 소득이 낮은* 준조합원등에 대해 예탁금등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3년 연장(~'28.12.31.)

※ 서민형ISA 가입조건과 동일한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천8백만원) 적용

○ 다만, 농어민 외 소득이 높은 준조합원등은 저율 분리과세('26년 5%, '27년부터 9%) 적용

- 농·어·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2028.12.31.까지 비과세, ▲2029년 5% 분리과세, ▲2030년부터 9% 분리과세
- 총급여 7,000만원(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가입일 기준 ▲2025.12.31.까지 비과세, ▲2026년 5% 분리과세, ▲2027년부터 9% 분리과세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 집합투자증권(역외펀드) 제외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미추징 사유 추가(조특법 §91의22)

○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보호를 위해 청년미래적금 가입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중도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조특법 §91의25)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500만원이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

300만원 이하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배우자 월세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 세대주와 주소를 달리하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세대주에 대한 월세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월세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부부합산 한도 연 1,0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7의9)

○ 내국인이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 신고가 수리된 날부터 5년 이내에 해당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토지 또는 건물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그 내국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때까지 양도소득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특례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요건 신설하고, 감면한도를 중소기업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 요건 완화(조특법 §99의10)

○ 3개월 이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도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등 체납액 징수 특례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고, 체납액 기준도 5천만원 → 8천만원 이하로 상향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 신설(조특법 §99의15)

○ 생계가 곤란한 체납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한 5천만원 이하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도록 하는 생계형 체납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 특례의 법적 근거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시행

투자·배당 및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 개편(조특법 §100의32)

○ 주주에 대한 배당을 통한 기업소득의 환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인세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는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대상에 배당을 추가하고, 미환류소득 산정을 위하여 기업소득 중 기업이 환류하여야 하는 소득 비율의 범위를 종전의 60%~80%까지에서 65%~85%까지(자산의 투자 합계액을 미환류소득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10%~20%까지에서 20%~40%까지)로 상향

구 분		종전	개정
환류대상		투자, 임금증가, 상생협력 지출액	(좌 동) + **배당**
기업 소득 비율	**투자포함형**	60~80%	**65~85%**
	투자제외형	10~20%	**20~40%**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 대학 재정건전화 지원을 위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과세이연 대상에 유가증권(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공채) 추가하고 과세이연 방식은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 시 익금산입(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 시 한정)

○ 과세이연금액을 익금산입하는 사유로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 취득 후 천재지변 등 정당한 사유로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제외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추징사유 추가(조특법 §104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부분복귀 후 국외사업장을 축소 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추징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고배당기업 주식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27)

○ 거주자가 배당성향, 배당금액 증가 등 요건을 충족하는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14%부터 30%까지의 세율로 분리과세

❶ 적용요건 (① + ② + ③)	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② 기준연도(2024년 사업연도) 대비 현금배당액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ⅰ) 배당성향 40% 이상 또는 ⅱ) 배당성향 25% 이상 및 전년 대비 배당 10% 이상 증가
❷ 적용세율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3억원) 20%, (3억원~50억원) 25%, (50억 초과) 30%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되는 배당분부터 적용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 §104의30)

○ 우수 선·화주기업 세액공제 요건 개편(운송비용 → 물동량) 및 원양노선에 대한 추가공제 신설

구 분		종전	개정
기본공제	요건	총 해상운송비용 중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총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40%**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비용의 3%	국적선사에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구 분		종전	개정
추가 공제	요건	<신 설>	**원양 해상물동량 중 국적선사를 이용한 물동량이 25%** 이상
	금액		국적선사에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한국산업은행의 첨단전략산업기금 출연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6)

○ 첨단전략산업기금의 원활한 재원조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은행이 첨단전략산업기금에 출연하는 경우 그 출연금을 출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특례를 신설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05)

○ 영세율 추징사유를 농·임·어업인이 아닌 자가 영세율 적용받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까지 확대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108)

○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대해 공제한도(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신설하고, 2개 과세기간(1년) 간 이월공제 허용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사업재편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채무상환 등을 위한 자산매각 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특례* 확대

* (종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개정)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기본공제 한도 금액을 자녀 및 손자녀 등 부양가족 1명당 5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25만원) 씩 최대 100만원(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인 경우 50만원)까지 추가로 상향

기본공제 한도	종 전 (자녀수 무관)	개 정		
		무자녀	자녀 1인	자녀 2인 이상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	250만원	**250만원**	**275만원**	**300만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지역사랑상품권 기업업무추진비 손금 확대(조특법 §136)

○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도 전통시장에서 지출한 기업업무추진비와 함께 추가 손금산입한도가 적용되도록 대상을 확대하고, 추가 손금산입 한도를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액의 10%에서 20%로 상향

구 분		손금 한도	
일반 한도	**기본한도**	1,200만원(중소기업 3,600만원)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비율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500억원	0.2%
		500억원 초과	0.03%
추가 한도	**문화비 지출분**	일반한도의 20%	
	전통시장 + 지역사랑상품권	**일반한도의 10% → 20%**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신설 및 확대 등
(조특령 §21, [별표 7], [별표 7의2])

○ 국가전략기술에 인공지능 분야가 신설되고 기존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 기술 및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등을 국가전략기술에 추가하고,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인공지능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이터센터가 국가전략기술 이외의 서비스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에 적용되는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 특례 가액요건 상향(조특령 §68의2①)

○ 지방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해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 가액을 수도권 공시가격 4억원, 비수도권 공시가격 9억원으로 상향

<적용시기> '25.8.14.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감면 등 특례제도 적용기한 정리]

적용기한	내용(조문)
종료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13의4) •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24)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91의20) •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91의22)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104의25)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107의3)
연장 (2026.12.31.)	•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비수도권 준공 후 미분양 주택 취득 특례 적용기한 연장(§98의9) •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기한 연장(§106) •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111)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의2)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11의5)
연장 (2028.12.31.)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7) •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7의4) •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8의3) •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13)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3의2)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3의3)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14, §16) •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15) •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18의3) •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25의6)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5의7) • 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27) •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29의4)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29의8)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0)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61)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3, §63의2)

적용기한	내용(조문)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의2)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69의3) •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1)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72)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74) •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77의3) •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6) • 중소기업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5의8) •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87)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87의2) •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88의2)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96)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96의3) •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99의4) •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적용기한 연장(§100의32) •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0)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104의31) •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105)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06)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107의2) •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108)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117) •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 연장(§121의33)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126의2) •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126의3) •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적용기한 연장(§136)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140)

09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절차 개선(국조법 §6②)

○ 이중 비과세 소득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과세당국에 정상가격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때 국외특수관계인 과세소득 조정 입증 서류 제출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자 확대(국조법 §41②)

○ 과세당국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으로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집합투자기구가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을 적용받으려는 등의 사유로 그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명의로 그 증명서 발급 가능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국조법 §73의2~§73의7, §74, §75, §77, §79~§81)

○ 특정 사업연도에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세율이 최저한세율(15%) 미만인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실효세율은 국내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금액의 합계액을 국내구성기업들의 해당 사업연도의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하도록 하고,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구성기업들에 적용되는 실효세율을 계산하는 데 필요한 조정대상조세는 추가세액 계산을 위한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하도록 하며,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금액은 국내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금액 합계액에서 글로벌최저한세결손 금액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 각 사업연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은 최저한세율에서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실효세율을 차감하여 계산한 비율에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초과이익 금액을 곱한 후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당기내국추가세액가산

액을 더하여 계산

○ 국내 저율과세구성기업은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을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한 금액인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납부하도록 하고,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은 각 국내구성기업의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와 부담능력을 고려하여 배분하는 방법 또는 내국추가세액의 배분에 대하여 해당 다국적기업그룹의 모든 국내구성기업이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는 방법 중 신고구성기업이 선택하는 방법에 따라 배분

○ 최종모기업이 아닌 국내 투자구성기업에 대하여는 일반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내국추가세액과는 별도로 국내 투자구성기업들의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각 국내구성기업의 해당 사업연도와 그 직전 2개 사업연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합계의 평균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같은 사업연도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의 평균이 1백만유로 미만인 경우는 각 국내구성기업의 각 사업연도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을 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적용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과세에 대해서도 소수지분구성기업으로 이루어진 소수지분 하위 그룹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소수지분 하위 그룹을 별개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는 특례 등을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 적용기한 신설(국조법 §111①)

○ 통합형피지배외국법인과세제도의 적용대상 및 적용에 따른 대상조세 납부대상에 관한 용어를 통일하는 한편, 해당 규정을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하고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종료하는 각 사업연도 내 주주구성기업에서 피지배외국법인으로의 대상조세 배분에 한하여 적용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 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기(旣) 개정사항 중 2026년도부터 시행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의무화 (소득법 §156의2, 법인법 §98의4)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령 §4)

○ 1년 중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외에 전년도부터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거주자로 판정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고가주택 2주택자의 간주임대료 과세대상 구체화(소득령 §53)

○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 2주택자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을 전세보증금 합계 12억원 초과로 규정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 증빙 인정 서류 확대(소득령 §107)

○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에 따른 발달재활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장애인 추가공제 적용을 위한 증빙 인정 서류에 발달재활서비스 이용증명서 추가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

퇴직소득세액 정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02의2, §203)

○ 퇴직소득세액 정산 시점의 산출세액에 맞추어 이연퇴직소득세액을 재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정산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도록 하며, 퇴직소득세액 정산 이후 이연퇴직소득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정산 당시 변경사항을 반영한 이연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제43조제2항(퇴직소득중간지급)에 따라 퇴직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3의3])

○ ❶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❷사진 처리업, ❸낚시장 운영업, ❹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 (138개 → 142개 업종)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법인법 §120의4, §124, 소득법 §164의4, §177)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 가상자산사업자가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시 국세청장에게 시정명령 및 과태료(최대 2,000만원) 부과 근거 마련

<적용시기>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 국조령 §75)

○ 우리나라의 권한 있는 당국과 체약당사국 간 상호주의에 따른 금융거래 자동정보교환 범위에 '암호화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거래'를 추가

○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의 보고대상 정보를 구체화,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을 암호화자산 중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 등을 제외, ▲암호화자산 거래 유형을 보고대상 암호화자산에 대한 교환, 이전으로 정의하고, 금융거래 및 암호화자산 거래에 준하는 거래를 투자자문업자·투자일임업자·집합투자기구 등이 취급하는 금융자산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거래, 파생상품시장 거래 및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전자적 형태의 법정통화에 대한 거래 등

<적용시기> (교환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